

## □ 서면1팀-177[2005.02.03]

### [제목]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

[요약] 법인이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

- 당사는 전자부품제조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4명의 주주로 이루어진 비상장법인으로 주주는 당사의 임직원(이사, 과장 등)으로 근무하여 근로소득도 있었으며, 주주 중 2명과 주주간의 영업전략 등 업무결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므로 주주들의 합의로 소유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잔여주주 개인들은 주식을 매입할 능력이 없으므로 당해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의된 가액(주식 액면가액의 10배 수준임)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4년 5월경 매매계약서를 작성, 2005년 1월 잔금을 청산하기로 함
- 한편, 당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빠른 시일 내에 주식소각(당사는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있으므로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단서 조항에 의거 이익소각 할 예정)한 후 동시에 소각한 주식수 만큼 잔여 주주 지분비율대로 액면가액에 의하여 유상증자할 예정임
  - 위의 경우에 있어서,
  - [1]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 [2]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 [3] 자기주식 소각 후 잔여주주에게 소각주식수 만큼 기존주주 비율대로 액면가액에 의하여 유상증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및 증여세 과세여부?
  - [4] 당해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잔여주주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 [회신]

[1]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의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3]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있어서는,

- 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 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이 주식을 시가(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및 제441조[동전]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 **상법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종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 ①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84·4·10, 98·12·28]
-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84·4·10]
-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 □ 재재산-251[2004.02.25]

[제목] 주식소각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요약]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질의]

#### 1. 사실관계

- (1) 내국법인인 갑은 주주 중 내국법인인 을이 소유한 주식만을 상법 제343조 제1항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소각하고자 합니다(이하 "본건 이익소각"이라 합니다.)
- (2) 이에 따라 갑은 을에게 일정액의 주식 소각대금을 지급하고, 을로부터 반환 받은 주식을 지체없이 소각할 예정입니다.

#### 2. 질의

##### 가. 질의내용

상법 제343조의 제1항에 의한 이익 소각의 절차에 따라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귀부의 해석을 인용하여 회신하였습니다.

(별첨3과 별첨4 참조).

그런데, 주식소각의 방법은 자본 감소의 절차에 의한 방법과 이익소각의 절차에 의한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는 바, 귀부의 해석이 이익소각에도 적용되어 이익소각에의한 주권의 반환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주권의 반환에만 한정되는 것이므로 이익소각에 의한 주권의 반환은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상법 제343조 제1항에 의한 이익소각의 절차에 따른 주권의 반환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재차 질의합니다.

<갑설>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 나. 질의자의 견해 : 갑설

###### [1]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의 정의와 쟁점

증권거래세법상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i) 유상으로 (ii)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본건 이익소각의 경우, 이익 소각 대금이 주주에게 지급되므로 유상에 해당할 것이지만, 주식의 소유권이 주주에서 당해 회사로 이전되는지는 쟁점이 될 것입니다.

###### [2] 상법의 규정

주식의 소각은 원칙적으로 상법상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이익소각, 또는 총회결의에 의한 이익소각의 방법으로만 소각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343조 제1항, 제343조의2]. 또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 주식의 취득을 금지하고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상법 제341조 제1호]<sup>1</sup> 그경우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상법 제342조). 이와 같이 주식실효 절차를 지체없이 밟도록 한 이유는 주식의 소각에 있어 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은 주식 소각 과정의 임시적인 단계일 뿐이고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sup>1</sup> ] 주식 소각 목적 이외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등은 자기 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41조]

또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주식 소유자 명의를 개서하지만, 주식 소각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명의 개서가 없는데, 이는 회사의 자기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주식소각의 절차상 임시적인 단계로 자기주식을 일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식소각에 의하여 주주의 소유권이 소멸될 뿐 회사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주식소각의 하나인 이익소각의 경우에도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므로, 이익소각에 의한 주식의 반환은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합니다.

### [3] 세법상의 규정

세법상으로 회사의 이익소각에 의한 주권의 반환을 양도로 보는지 아니면 출자금의 반환인 자본거래로 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보고 있으므로[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주식의 소각의 일종인 이익소각은 출자의 반환일 뿐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도,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보고 있으므로[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주식의 소각의 일종인 이익소각을 출자의 반환인 자본거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익소각으로 지급된 금액은 손금[주식의 취득원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이익소각에 의한 주권의 반환을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자본의 환급으로 보고 있고, 이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주권의 소유권은 회사에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귀부는 주식소각의 하나인 자본감소 절차에 있어 주식을 유상으로 소각하고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재재산 46012-232, 2002.11.29]<sup>2</sup>. 이러한 해석은 자본 감소 절차에 있어 주주의 주식 소유권은 소멸할 뿐 회사로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해석을 보더라도 주식소각의 다른 방법인 이익소각에 의한 주권의 반납도 소유권이 회사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sup>2</sup> ] 이외에 국세청은 첨부된 예규와 같이 이익소각에 의한 주권의 반환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귀부의 해석을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일 46011-10447, 2002. 4. 4 재재산 46012-175, 2002.6.15]

### [4] 결론

주식소각인 자본 감소와 이익소각인 경우 주주의 주식 소유권은 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므로, 자본감소로 인한 주권의 반환은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과 동일하게, 이익소각에 의한 주권의 반환도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 ○ 별첨2

#### 관련예규

- [1] 서일 46011-10447, 2002.04.04,
- [2] 재재산 46012-175, 2002.06.15
- [3] 재재산 46012-232, 2002.11.29

[분류/일자] 서일 46011-100447, 2002.4.4

[제목]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상황]

1. A법인(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상속세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 23,500원

2. A법인(중소기업) 출자지분내역(1주당액면가액 5,000원)

대주주(대표이사) 38%

갑(처) 8%

을(제) 35%

병(자) 19%

100%(특수관계지분 100%)

[질의]

문1) 상기 2호의 "을"주주 지분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회사가 "을"소유 지분 자사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소각(상법상 주식소각과는 달리 자본감소 효과는 없음)하였을 때

- ① "을"주주가 이제배당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주식양도에 해당되어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② "을"주주가 양도한 가액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③ 결산보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감) 작성시 이익소각한 "을"주식의 지분, 가액의 표시방법

문2) 상기 2호의 "을"주주지분을 상법 제343조 본문 규정에 의한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유상감자를 위하여 "을" 소유지분 자사주식을 매수하여 주식소각을 하였을 때

- ① "을"주주가 주식양도에 해당되어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이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 ② "을"주주가 양도한 가액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3) "을"주주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바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에 가산하는 30%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계법령과 국세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

[소득 46011-21368, 2000.11.27; 소득 46011-21166, 2000.9.22; 재재산 46014-175, 2000.6.15; 재일 01254-2992, 1992.9.25]을 참고하기 바람.

[분류/일자] 재재산 46014-175, 2000.6.15

[제목] 갑법인에 출자한 주식을 장외시장을 통해 갑법인에 액면가액으로 환매하고  
갑법인은 매입한 주식을 바로 소각해 감자하는 경우, '주권의 양도'에 해당함

[질의]

1. 국세청 예규[소비 22641-2460, 1985.12.17]에 따르면 '회사의 잔본금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고 액면가액으로 현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주권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2. 그렇다면 우리 공사가 출자한 은행의 주식을 장외시장을 통해 동 은행에 액면가액으로 환매하고, 동 은행은 매입한 주식을 바로 소각해 감자할 경우, 상기 예규가 적용되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증권거래법세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주식을 환매도한것으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분류/일자] 재재산 46014-232, 2002.11.29

[제목]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감자와 관련 주권반환의 대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일 경우와 이익잉여금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유상매입하여 임의소각한 경우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유상매입방법의 주식소각으로 자본감소(감자)를 하는 경우, 신청주식의 대가가 그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갑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이유] 주식소각에 주주가 본인의 의사로 주식을 액면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장외에서 매도하였으므로 주권의 유상양도와 다를 바 없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을설> 주권의 매입대가와 관계없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감자결의에 의한 주주의 주권매도는 주식의 유상양도가 아니라 자본을 반환한 것으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 2) 상법절차에 따라 자본감소(감자)를 할 때, 소각할 주식의 매입자금이 주주에게 배당할 배당금의 원천인 이익잉여금으로써 특정주주로부터 유상매입 주식소각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갑설>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이유] 상법절차에 따라 자본감소(감자)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정주주와 개별계약에 의해 매매한 것과 같으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을설> 자본의 전환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자본감소(감자)방법으로 주식을 유상매입 소각할 때, 그 자금원천을 불문하고 상법의 절차에 따른 경우에는 자본의 반환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 3) 질의 2의 경우 특정주주로부터의 유상매입이 경영권의 이전과 관계된 것이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이유] 이 경우의 주권매도는 경영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유상양도에 해당함.

<을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상법에 따른 감자절차에 의한 것이므로 주권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반환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사항

상장기업이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거 이익소각(자본감소는 없음)을 목적으로 당해 연도 이익 잉여금의 한도(배당가능한도)내에서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 즉 공개매수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소득세법 제17조 1항의 3. 의제배당"으로 인정되어 공개매수사무취급인인 증권회사가 응모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증권거래세(장외거래세 0.5%)의 징수의무는 없는지 여부

[회신]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